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 대테러훈련시뮬레이터 구축
○ 발주기관(갑) : 경찰청
○ 제조사(을) : 옵티머스시스템(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대테러훈련시뮬레이터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을"의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가. 물품공급은 "을"과 낙찰자 간의 별도 협의된 물품 단가에 의해 수행된다.

나. 기술지원은 위 사업을 낙찰자가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자문을 말하며, 그 수행 방법은 "을"과 낙찰자 간의 별도 협의된 절차에 의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원가검토안을 기반으로 "갑"과 "을"이 협의한 일금 259,035,818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협약된 기술지원은 "을"과 낙찰자 간의 '기술지원협약서' 체결 후 낙찰자가 "을"에 협약금액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수행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5월 21일

"갑" (경찰청) (인)

"을" (옵티머스시스템(주)) (인)